통일부 공고 제2024-125호

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통일부장관

1 지정요건

『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』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1. 조직 형태

○ **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**

①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
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
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
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⑥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⑦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
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ㅁ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
○ **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,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**

⑨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
⑩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2.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○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-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.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
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(실적기간 : 3개월)

○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 함

* **유급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야 하며**,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.

*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: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내역, 급여명세서 등

▌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▐

① **일자리제공형**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

② **사회서비스제공형**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
③ **혼합형**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

④ **지역사회공헌형**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㉮ 지역(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

㉯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

㉰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

⑤ **기타(창의·혁신)형** :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3.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○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
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
○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

4.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○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야 함.

-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-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.

※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

※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
▌상법상 회사 · 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▐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
○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
○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· 미술관
○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
○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단, 보건의료사업은 제외)

5.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○ 근로기준법·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.

> ㅁ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.
> ㅁ 법령위반 적용기준 :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(위반사항 발생하더라도 해소 시 지정요건이 충족(유지함)된 것으로 봄)

○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**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**

<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안내>

- 교육기관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
- 홈페이지 : www.seis.or.kr(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)

<그 외>

- 지자체, 대학 및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)
-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(현장실사 시까지 미제출시 탈락)에 한함

6. 지정신청 제한

○ 부처형·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
※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: **2017. 1. 1. 신청 분부터 적용**, 부처형.지역형 합산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

기업은 그 만료·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
ㅁ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○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

○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 또는 다른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(신청) 불가

2 지정절차 등

1. 지정절차 및 일정

○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신청서 접수 (10.17.~11.7.)	⇒	서류검토/현장실사 (11월 3주~11월 4주)	⇒	지정 심사 (11월 5주)	⇒	지정 결과통보 (12월 중)
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	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통합센터)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		심사위원회		통일부

※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정기간 : 지정서 발급일부터 **'3년'**

※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(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)

3. 지원사업

○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

○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

○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

○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

- 단,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·기업지원을 받은 경우(개인, 법인 등)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

○ 그 외 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

3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**2024. 10. 17.(목) ~ 11. 7.(목)**

○ 신청방법 : 인터넷 접수

- 접수처 : 사회적기업 포털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
- 방 법 :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

*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:

①회원가입(일반 및 기업회원) → ② 지정신청(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)

- 시스템 입력 문의 : 사회적기업 포털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(☎ 1661-4006)
- 지정 관련 요건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(☎ 1551-2024)

4 유의사항

1. 지정취소(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취소함)

○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
○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
○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

-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,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

○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
(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)

※ 지정 취소시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사전통지(제21조) 및 의견청취(제22조) 절차를 진행함. 단, 폐업,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.

2. 지정반납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,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 할 수 있음

3. 지정 후 관리

○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(상하반기 각 1회 실시)

- 교육내용 : 사회적기업 육성정책, 인증절차 및 방법,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
- 교육대상 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
- 교육기관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

○ 모니터링 실시 협조
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 등 모니터링 실시
- 모니터링 사항 : 지정요건 유지여부, 사업계획의 이행여부, 대표자가 개인사업자,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

○ 사업보고서 제출

-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내 통합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
-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,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

5 문의처

○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(☎ 02-3215-5776)

○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(☎ 1551-2024)

* 발신지 기준 근거리에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로 자동연결

6 신청 제출서류

구분 \ 유형		제출서류 세부사항
공통서류		1.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【별제 제1호】 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【별지 제2호】 3.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【별지 제3호】
기 업 의 조직형태	필수	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
		1. 사업자등록증 2. 법인설립허가증, 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. 기업 소개자료 (선택사항)
유 급 근로자 고 용	필수	1. 유급근로자 명부(취약계층 기재)【별지 제2호의7】 2. 임금대장/급여명세서 3.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(4대 보험 포함)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【별지 제2호의8】
영업활동	필수	1. 재무제표(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, 제조원가명세서(제조업)) 2. 총계정원장(매출장, 현금출납장 등) 3.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·확인 ※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-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 가결산자료 제출(재무제표확인원 제출) -회계기관의 직인 날인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사회적
목적
실현</td><td>유형</td><td>사회서비스
제공형</td><td>일자리
제공형</td><td>지역사회
공헌형</td><td>혼합형/기타(창의
혁신)</td></tr>
<tr><td>공통</td><td colspan="4">1.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【별지 제2호의2~6】</td></tr>
<tr><td>필수</td><td>2. 취약계층
사회서비스
제공 증빙</td><td>2. 취약계층
고용 증빙</td><td>2. 취약계층
고용, 취약계층
사회서비스
제공 증빙</td><td>2. (혼합)취약계층
고용, 취약계층
사회서비스
제공 증빙
2. 기타(창의혁신)
사회적 목적
실현여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※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
※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“주된 목적”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</td></tr>
<tr><td>사회적
목 적
재투자</td><td>필수</td><td colspan="4">1. 공증 받은 정관·규약 등
※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
※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, 이익의 재분배 내용(해산 및 청산시 포함)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
※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선택</td><td colspan="4">1. 마을기업·지역형·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 기업만 제출)
2. 공공기관, 기업체,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</td></tr>
<tr><td>필수</td><td colspan="4">1.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
2. 그 외 지자체, 대학 및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</td></tr>
</table>

【별지 제1호】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
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

① 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② 대 표 자	
③ 연 락 처	☏ (FAX.) (e-mail.)	④ 사업자등록번호	
⑤ 소 재 지			
⑥ 조 직 형 태	**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** □ 사단법인 □ 재단법인 □ 민법상 조합 □ 주식회사 □ 유한회사 □ 합자조합 □ 공익법인 □ 비영리민간단체 □사회복지법인 □소비자생활협동조합 □ 협동조합 □ 사회적협동조합 □ 협동조합연합회 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□ 영농·영어조합법인 □ 농업·어업회사법인 □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**2.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** □ 문화단체 등		
⑦ 지정 유형	□ 사회서비스 제공형 □ 일자리 제공형 □ 지역사회 공헌형(㉮[ ], ㉯[ ], ㉰[ ]) □ 혼합형 □ 기타(창의·혁신)형		
⑧ 전체유급 근로자수(A)	명	취약계층 근로자수(B)	명
		취약계층 고용비율(B/A)	%
⑨ 주된 사업내용			
⑩ 업종		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	
⑫ 사업분야	□ 교육 □ 보건 □ 사회복지 □ 환경 □ 문화·예술 □ 보육 □산림 보전 및 관리 □ 가사 간병 □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□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□ 고용서비스 □ 제조 □ 유통 □기타		
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1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서식] 3.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별지 제2호의2~제2호의6서식) (해당기업만 제출) 4.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2호의7서식] (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)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.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 6. 정관·규약 등 7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8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[별지 제2호의8서식] 9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기업만 제출) 10.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.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e-러닝 수강(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) 이수확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2.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
【별지 제2호】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◈ 기업개요

기 업 명 (기 관 명)		대 표 자	
소 재 지			
연 혁			

◈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 회 적 목 적 실 현 유 형	□ 사회서비스 제공형 □ 일자리 제공형 □ 지역사회 공헌형(㉮[ ], ㉯[ ], ㉰[ ]) □ 혼합형 □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 직 형 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취약계층 근로자 30% 이상 고용 등)
의 사 결 정 구 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 관 (규 약)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◈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◈ **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**

3. 사업 역량	*3-1*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*3-2*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*3-3*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
4. 사업 목표	*4-1* 연차별 매출규모 *4-2* 고용창출 계획 *4-3*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*4-4*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

◈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1년차	(예시) 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
2년차	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 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
3년차	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

◈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

【별지 제2호의2】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
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
	명		명		%
취약계층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
	1				
	2				
	3				
	4				
	5		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【별지 제2호의3】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
근로자	전체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
	명		명	%

취약계층 근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
	1			
	2			
	3			
	4			
	5	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【별지 제2호의4】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신청기업명
(신청기관명)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업지역</td><td colspan="7">(　　)시/도　(　　)시/군/구</td></tr>
<tr><td rowspan="13">지역
사회
공헌형
㉮</td><td rowspan="2">일자리 제공</td><td colspan="3">전체 근로자(A)</td><td>지역취약계층
근로자(B)</td><td colspan="2">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명</td><td>명</td><td colspan="2">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회서비스
제공</td><td colspan="3">전체 서비스 수혜자(A)</td><td>지역취약계층
수혜자(B)</td><td colspan="2">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명</td><td>명</td><td colspan="2">%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지역취약계층
근로자
또는
수혜자</td><td>구분</td><td>연번</td><td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해당 취약계층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근
로
자</td><td>1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3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수
혜
자</td><td>1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3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※별지작성 가능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역자원
연계현황</td><td colspan="3">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 내용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지역주민의 소득·일자리 증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역
사회
공헌형
㉯</td><td rowspan="2">지역의 사회
문제해결 분야</td><td>해당분야
수입(A)</td><td>전체
수입(B)</td><td>A/B</td><td>해당분야
지출(C)</td><td>전체
지출(D)</td><td>C/D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%</td><td></td><td></td><td>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역
사회
공헌형
㉰</td><td rowspan="2">사회적 목적
추구 조직에
대한 지원 분야</td><td>해당분야
수입(A)</td><td>전체
수입(B)</td><td>A/B</td><td>해당분야
지출(C)</td><td>전체
지출(D)</td><td>C/D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%</td><td></td><td></td><td>%</td></tr>
</table>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기관 대표　　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　귀하

구부서류	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※ 비고

1. "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"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【별지 제2호의5】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<table>
<tr><td>신청기업명
(신청기관명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일자리 제공</td><td colspan="2">전체 근로자(A)</td><td colspan="2">취약계층 근로자(B)</td><td>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명</td><td colspan="2">명</td><td>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회서비스 제공</td><td colspan="2">전체 서비스 수혜자(A)</td><td colspan="2">취약계층 수혜자(B)</td><td>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명</td><td colspan="2">명</td><td>%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취약계층
근로자
또는 수혜자</td><td>일련번호</td><td>이름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
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</td></tr>
<tr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3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5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</td></tr>
</table>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)

【별지 제2호의6】기타(창의·혁신)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기타(창의·혁신)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
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(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)	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*사회문제 해결 부분 *공익적 목적 부분 - 관련 사업 추진 실적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장 귀하

구비서류	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【별지 제2호의7】유급근로자 명부

유급근로자 명부

연번	근로자 성명	생년월일	성별	취약계층 유형 ①	입사일 ②	월 임금액 ③	주 근로시간 ④	고용형태 ⑤	직종 ⑥
1	*홍○○*	*000.00.00*	*남*	*해당없음*	*00.00.00*	*2,070,000*	*40*	*기간제*	*사무직*
2	*박○○*	*000.00.00*	*여*	*결혼이민자*	*00.00.00*	*2,070,000*	*40*	*무기계약직*	*단순노무직*

※ 작성방법
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,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'해당없음'으로 작성
- 취약계층 유형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·경력단절여성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피해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대상자, 범죄구조피해자, 장기실직자, 수형자, 소년원생, 보호관찰청소년, 노숙인, 약물 등 중독자, 여성가장, 난민, 보호종료아동

② 입사일: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(근로시작일)
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,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
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(ex: 주 40시간, 주 30시간, 주 20시간 등)
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
- 기간제 근로자: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(ex: 1년 계약 등)
- 무기계약직 근로자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ex: 정규직 등)

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
- 관리자, 전문직, 사무직, 서비스종사자, 판매직, 단순노무직

【별지 제2호의8】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

(앞쪽)

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

*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**반드시 '대표자' 직접 작성**함

*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**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** 될 수 있음

1	'근로기준법'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		□예 □아니오
	예시	❶ 근로기준법 준수 ·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·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·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·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❷ 최저임금법 준수 ·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(2024년 시간급 9,860원, 월209시간 기준 2,060,740원) ·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·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·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❹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, 파견법, 직업안정법 등) 준수 ·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·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	
3	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		□예 □아니오
	예시	·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	
3	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		□예 □아니오
4	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*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(기업명) 및 관련 서류 제출(사업자등록증) 1.( ), 2.( ), 3.( )		□예 □아니오
5	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*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(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, 기타사항) ( )		□예 □아니오
6	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(지정)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		□예 □아니오
7	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*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(기업명) 및 관련 서류 제출 1.( ), 2.( ), 3.( )		□예 □아니오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「근로기준법」
2.「최저임금법」
3.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)
17.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
18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)
19.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)

【별지 제3호】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,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핸드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개인정보의 제공: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성 명	
주민등록번호	-
연락처	010-0000-0000